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061
----------	-------

발의연월일 : 2026. 1. 15.

발 의 자 : 박균택 · 정준호 · 양부남
박정현 · 박 정 · 정일영
한민수 · 김동아 · 황명선
한준호 · 권철승 · 최혁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음. 기술 유출은 단순한 기업 차원의 피해를 넘어 국가 산업 경쟁력 약화, 국가안보 위협으로 직결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국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국가 산업의 발전에 있어 필수 불가결인 요소로 자리매김하였음.

우리나라는 기술 보호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적 보호장치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은 여전히 경쟁국으로 유

출되고 있는 실정임.

기술유출범죄의 경우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고도의 기술 전문성이 요구되며, 특히, 국가핵심기술을 비롯한 산업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대부분 영업비밀 유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한편, 현재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은 기술·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영업비밀 침해 등에 관하여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국가핵심 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사건 발생 시 효율적인 수사가 이뤄지기 어려움.

이에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8호의2 및 제6조제35호의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8호의2 중 “영업비밀 침해”를 “영업비밀 침해,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로 한다.

제6조제35호의2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항, 제37조에 규정된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38조에 규정된 범죄

사.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0조에 규정된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 ----- ----- ----- ----- ----- ----- ----- ----- ----- ----- ----- -----.
1. ~ 38. (생략)	1. ~ 38. (현행과 같음)
38의2. 지식재산처에 근무하며 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 디자인·전용실시권 및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38의2. ----- ----- -----영업비밀 침해, <u>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국 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u> ----- -----
39. ~ 53. (생략)	39. ~ 53. (현행과 같음)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

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1. ~ 35. (생략) 35의2. 제5조제38호의2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범죄 가. ~ 마. (생략) <u><신설></u> <u><신설></u> 36. ~ 50. (생략)	----- ----- ----- -----. 1. ~ 35. (현행과 같음) 35의2. ----- -----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항, 제37조에 규정된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38조에 규정된 범죄 사.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0조에 규정된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 36. ~ 50. (현행과 같음)
--	--